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58

발의연월일: 2021. 5. 7.

발 의 자:조정식·강선우·강훈식

김주영 · 김홍걸 · 민형배

송갑석 · 신정훈 · 양정숙

정필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연구소기업은 대학,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%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내에 설립하는 기업임.

이러한 연구소기업은 2006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, 자본금의 규모가 영세한 부실 기업도 함께 증가하여 그 등록이 취소 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.

그러나 연구소기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·열람하고 부실 운영 등문제 발견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행법상 이에 대한제재 및 관리·점검 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, 등록 취소까지 불필요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사·열람 권한과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

으로써, 연구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제9조의3제7항·제8항, 제9조의4제1항제6호·제7호, 제9조의4제2항 단서 및 제76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의3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-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조사 및 열람 결과 이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연구소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9조의4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연구소기업이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7. 연구소기업이 등록취소를 요청(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에 참여한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)한 경우

다만,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제7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으로 한다.

③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조사나 열람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3(연구소기업의 설립 등)	제9조의3(연구소기업의 설립 등)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	연구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
	위하여 제3항에 따른 요건을
	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
	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
	<u>있다.</u>
<u> <신 설></u>	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	제7항에 따른 조사 및 열람 결
	과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
	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바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그
	시정을 명할 수 있다.
제9조의4(연구소기업의 등록 취	제9조의4(연구소기업의 등록 취
소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	소 등) ①
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	
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	
소하여야 하고, 제2호에 해당하	

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.

1. ~ 5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제76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<신 설>

	-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-
	-	_	_	_	_	_	_	_	_	_	_	_	-	_	_	_	_	_	_	_	_	_	_	_	_	-
	-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		_	_	_	_	_	_	_						_	_	_	_	_	_	_	_	_	_	_	_	
	_	_	_	Τ,																						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연구소기업이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7. 연구소기업이 등록취소를 요청(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에 참여한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)한 경우
- _____
- -----. <u>다만, 제1항제7호에 해</u> 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 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76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조사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나 열람을 거부・방해 또는 기
피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
과태료를 부과한다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
<u>정</u>